

WTO DDA 통신협상을 대비한 대응전략: 외국인 지분한도를 중심으로

The Strategies for WTO DDA Telecommunications Negotiations: Focused on Foreign Equity Participation Limit

강신원(S.W. Kang)

통신경영연구팀 선임연구원

정성영(S.Y. Jung)

통신경영연구팀 책임연구원, 팀장

WTO 통신협상 시 우리 나라 통신서비스 분야의 주요쟁점사안 중의 하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통신서비스 시장규모와 발전전망이 높은 우리 나라에 투자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및 외국인 대주주 허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 보다 클 경우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 참여를 통한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여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경우 순기능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가 크다면 지분확대가 통신사업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의 추가적인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확대에 앞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 외국인 지분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질적 규제장치 도입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 서론

WTO 통신협상 시 우리 나라 통신서비스 분야의 주요쟁점사안 중의 하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통신서비스 시장매력도와 발전전망이 높은 우리 나라에 투자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및 외국인 대주주 (majority share) 허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1].

한편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외자도입 확대 방안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외국인 투자지분한도는 49%로 제한된 상태이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인 지분한도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WTO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통하여 지분한도가 완화될 경우 현재와는 다른 경영환경 및 소유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러한 외국인 투자한도의 확대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 기회의 확대 및 효율적인 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반대로 경영권 침해, 국익의 해외유출, 국민반발 등 부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WTO 협상을 통하여 현재 기간통신사업에 대해 유지되고 있는 49%의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에 대한 추가확대 요구에 대한 실익 및 파급효과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고는 WTO DDA 통신협상시 정부가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소유한도”를 확대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상황변수를 고려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II. 주요 국가의 외국인 지분제한 사례

통신서비스시장 시장접근과 관련된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주요국들은 일정한 외국인 지분한도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통신서비스에 대해 미국과 헝가리는 외국인에게 과반수 이상의 지분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멕시코, 중국은 과반수 이상의 외국인 지분보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외국인 지분보유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무선분야에서 20%의 직접투자 제한 및 간접투자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적용하고 있으며, 헝가리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보유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주요서비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업자 수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표 1> 참조).

한편 주요국들은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영화과정에서 소유구조를 정착시켰으며, 민영화 과정에서 소유를 분산하고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영화 이후에도 통신의 공익성 확보 및 경영권 남용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일인 지분제한을 통해 분산형 소유 구조를 채택하였고, 황금주(golden share), KIWI share와 같은 특별주를 보유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일정지분 보유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의 경우는 외견상 무선국 면허에 대하여 직접투자 20%, 간접투자 100%라는 외국인 지분보유 제한규정이 있지만, 투자규모가 25%를 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 심사(market power test) 및 공익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외

국인 지분참여를 제한하고 있다.¹⁾ 즉 “공공의 이익”과 “경쟁을 위해” 등 애매한 이유로 인증 및 면허거부가 가능하다.²⁾ 따라서 이와 같이 사업신청과는 관계없는 심사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미국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2].

2. 영국

영국은 민영화된 공기업의 독립성과 국내투자자의 경영권 유지를 위하여 외국인 지분보유와 개인별 지분보유 한도를 제한하거나 황금주가 발행되었다. 원칙적으로 동일인 지분제한이 15%이나, 단 황금주 보유자가 15% 지분제한 정관의 개정예 동의하는 경우에만 15% 취득 가능하다[3].

이러한 통신사업의 공공성확보 방안으로 BT의 민영화 시 황금주가 발행되었으나 1997년 폐지되었다. 황금주를 보유한 정부는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으며, 2명의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들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졌다. 그리고 지분한도의 변경이나 외국인의 대표이사 취임 등 중요사항은 특별주의 소유자인 정부의 문서에 의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표 2> 참조).

3. 일본

일본의 경우 1998년 7월 KDD 법이 폐지됨에 따라 NTT를 제외한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이 폐지되었다. NTT 외국인 지분보유에 대해서는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Control Law에 의하여 동일인 지분 10% test rule을 도입

1) 미국은 통신법 301조로 외국사업자의 무선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미국의회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안보관련 정보의 국외유출을 막기 위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이 조항을 시행하였다[2].

2) 해당신청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인증거부의 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사업전개의 지연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신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 투자가 저조했고, 경쟁체제의 정착이 지연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1> 외국인 대주주 소유한도 해외사례

		외국인 소유한도	비고
미국	외국인 지분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 100% (직/간접 불분) 무선: 간접투자자(100%), 직접투자자(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FCC는 외자진입의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통해 묵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투자규모가 25%를 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 심사 및 공익성심사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지분참여를 제한 - “공공의 이익”과 “경쟁에의 위해” 등 애매한 이유로 인증 및 면허를 거부 가능
	대주주 및 임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주주: 제한 없음 임원: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이익”과 “경쟁에의 위해” 등 애매한 이유로 인증 및 면허를 거부 가능
	대표적 기간 통신사업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mon Carrier의 무선허가와 관련하여 다음해당자 (기업)에게는 소유권이 불허(직접투자자의 경우)됨 - 외국정부나 대표자 - 미국시민이 아닌 자나 미국시민이 아닌 자의 대표자 - 미국법 하의 조직된 회사가 아닌 기업 - 이상의 자가 2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기업
한국	외국인 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허용: 49% 대주주: 1999년부터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KT 정관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인 지분매입 한도를 전체 지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지만, 완전 민영화된 KT에게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음
	대표적 기간 통신사업자 제한(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대주주 금지 - 사업법 부칙 제4조 (2001.1.8. 개정) 	
영국	대표적 기간 통신사업자 제한(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인지분제한 - 15%(3% 이상 취득시 BT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동일인 지분제한이 15%이나, 단 황금주보유자가 15% 지분제한 정관의 개정예 동의하는 경우에만 15% 취득 가능(현재는 폐지됨) 황금주를 소유한 정부는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으며, 2명의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들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짐 - 그리고 지분한도의 변경이나 외국인의 대표이사 취임 등 중요사항은 특별주의 소유자인 정부의 문서에 의한 사전동의를 필요로 함
뉴질랜드	대표적 기간 통신사업자 제한(TCNZ)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지분한도: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투자에 대한 25% test rule을 적용함 영국의 황금주와 같은 KIWI share 제도가 있음
일본	대표적 기간 통신사업자 제한(N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지분한도: 20% 동일인 지분: 10% test rule 도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NTT의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예정
호주	대표적 기간 통신사업자 제한(Tels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지분한도: 35% 동일인 지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년 8월 “외국인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The Foreign Acquisition and Takeovers Acts)” 개정 이후 외국인 및 동일인 소유지분에 관한 규제가 폐지되었으나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경우와 Telstra는 예외 조항으로 남겨두었음
멕시코	외국인 지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비보유서비스: 49% (직접투자) 셀룰러서비스: 49% 초과 가능(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정부는 멕시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에 참여하거나,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음
	외국인 대주주 및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법을 통하여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한다는 통신법의 역할의 근거로 외국인의 지분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위성의 부분적 운영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음
헝가리	외국인 지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내/시외전화서비스: 최대 75%(직/간접 불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은 최소 25% 지분과 추가적으로 MATAV/Antenna Hungaria Rt.의 의결권주 1표를 보유함
	대표적 기간 통신사업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내/국제서비스: 2002.12.31. 까지 독점¹⁾ 시내서비스: 2003.12.31. 까지 독점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년 정도 앞당겨 2001.12.22.에 개방됨 2) MATAV는 2001.12.22. 또는 2002.11.1.에, MATAV를 제외한 시내전화사업자는 2002.5.1.~12.31.에 독점적인 지위를 상실함
	대주주 및 임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주주: 제한 없음 임원: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적으로 MATAV/Antenna Hungaria에 대한 의결권주 1개를 보유하도록 규정 -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75%를 허용하면서도 회사의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권은 내국인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

주) 저자정리

<표 2> 주요국의 특별주의 대표적 운영사례

국가	특별의결권의 주요내용	소유·지배권 제한
영국 (Golden Sh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인 기업회의 참석 및 발언권 • 15%로 되어 있는 소유제한 상한선의 정관개정에 대한 거부권 • 정부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투표권을 갖는 2명의 이사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소유권 제한 • 3% 이상 소유자의 등록 의무
뉴질랜드 (KIWI Sh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서비스 및 가격을 결정하는 원칙에 관한 정관 규정에 대한 감독 • 이 규정의 개정에 대한 거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의결권 제한
말레이시아 (Special Sh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정부정책에 일치되도록 함 • 분할, 자산의 매입 및 매각, 매수합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 표명 • 12명의 이사 중 최소 2명, 최대 6명의 이사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의결권 제한 (정부, 우리사주 제외) • 25% 외국인 소유권 제한
싱가포르 (Special Sh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발행, 자산매각, 이사선임에 관한 정관개정에 대한 거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의결권 제한 • 40% 외국인 소유권 제한

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는 20%가 최대 소유한도이다.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정부가 NTT 지분을 1/3 이상 보유하고 있다.³⁾ 한편 NTT 민영화의 진전을 위하여 정부지분이 30% 이하 및 외국인 지분이 20%를 초과해야 된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3].

4. 기타 국가

뉴질랜드의 통신사업자인 TCNZ의 외국인 투자 한도는 49.9%이고 외국인 투자 25% test rule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는 영국의 골든주와 같은 키위주(KIWI share)가 있다.

이탈리아는 민영화된 공기업은 정관에 의해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된 자의 지분보유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Credito Italiano사와 BCI사는 3%, IMI사는 10%, INA사는 5%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 운송, 통신, 에너지 및 기타 기간산업의 민영화 시에 정부가 특별주를 발행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1997년 8월 “외국인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The Foreign Acquisition and Takeovers Acts)” 개정 이후 외국인 및 동일인 보유지분에 관한 규제가 폐지되었으나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경우와 Telstra는 예외 조항으로 남겨두고 있다. 그밖에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은 없다[4].

멕시코는 통신사업의 외국인 투자는 49%로 제한하고 있다. 셀룰러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위원회(CNIE)의 승인을 받아 지분 49% 이상의 보유가 가능하다. 멕시코는 통신법을 통하여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한다는 근거로 외국인의 지분보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위성의 부분적 운영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위성의 운영은 멕시코 내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자가 국가간의 조약을 준수하는 조건이 있고, 다자간 협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위성도 멕시코가 협상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멕시코 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2].

헝가리는 시내 및 시외전화시장의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는 75%이고, 내국인의 최소지분보유 한도를 25%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MATAV/Antenna Hungaria에 대한 의결권주 1개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를 75%로 허용하면서도 회사의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권은 내국인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의 황금주나 뉴질랜드의 키위주와 같은 성격이다.

III.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1997년 2월 WTO 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되고 1998년 2월 발효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협상 시 양허한 개방내용에 맞추어 국내법이 개정되어 1998

3) 일본은 NTT에 대하여 외국인, 외국기업이 일정부분 이상 지분 취득 시 통신안보 관점의 심사를 함으로써 외국인 동일인 지분 10% test rule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표 3> 우리 나라 WTO 양허안과 실제 개방내용

구분		1997년 당시 규정	WTO 최종양허표	현황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KT	• 금지	• 1998년부터 20% • 2001년부터 33%	• 1998.9. 부터 33% • 2001.4.9. 부터 49%
	기타 기간사업자	• 유선: 금지 • 무선: 33%	• 1998년부터 유무선 33% • 2001년부터 유무선 49%	• 1999.7. 부터 49% • 현재 법적용상 이견존재
동일인 지분보유 한도	KT	• 1%(내국인만)	• 3%(내외국인 불문)	• 1999년부터 15%
	기타 기간사업자	• 유선: 10% • 무선: 33%	• 유선: 10% • 무선: 33%	• 1998.9. 폐지
외국인 대주주	KT	• 금지	• 금지	• 금지
	기타 기간사업자	• 금지	• 1999년부터 허용	• 1999년부터 허용

주) KT 정관은 “공기업을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인 지분매입 한도를 전체 지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지만, 완전 민영화된 KT에게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음

<표 4> 국내 법률에 의한 외자 규제 내용

구분	외국인 보유지분 한도	외국인 대주주 금지
법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2001.1.16.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2001.1.8. 개정)
내용	외국인 보유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외국인 등은 공기업을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주) “공기업을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8조(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① “동일인(외국인 포함, 제19조)”은 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개정 1999.1.29.).

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표 3> 참조).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에 따라 주식매입을 통한 외국사업자의 진입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별정통신서비스 허용을 통해 통신서비스의 자유화가 가속화 되었다[5].

우리 나라의 경우 최종양허 내용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 제한을 2000년까지 33%, 2001년부터 49%로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 및 규제완화 측면이 고려되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를 1999년 7월부터 49%로 조기 확대하였다[6],[7].

또한 2001년 4월 9일부터는 KT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를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49%로 확대하였다. 한편 동일인 지분한도도 15%로 되어 있으며 “공기업을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적용 받아 외국인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규정은 KT의 완전 민영화된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표 4> 참조)[8].

IV.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가 통신사업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9]-[12].

첫째, 외국자본의 유입 확대로 국내통신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 완화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의 기회를 확대시켜 국내기간통신사업자의 마케팅, 망시설 투자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 외국사업자의 경영권 참여로 합리적·효율적 경영 유도이다. 외국통신사업자의 경영권 참여로 국내통신사업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표 5>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사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조정의 기회확대 사업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사업 매각에 따른 성장기반 잠식 가능성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투명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식 경영의 급속한 도입으로 비용발생 정부 정책수단 제약과 실효성 약화 M&A 등 경영권 분쟁 등 부작용 증가
재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건전성, 현금흐름 중시 경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운용의 단기화, 구조조정 지원에 어려움 - 미래 성장기반구축에 소극적 수익의 과다한 해외유출
인사/조직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 인사관행 도입의 계기 - 노동시장 활성화 - 실무경험과 능력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불안 증가, 조직실패 붕괴 등 부작용 - 대량실업 발생 - 노사마찰 심화
글로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격화로 선진기술·노하우 습득에 주력 -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기업의 세계적 전략에 종속 - 국민반발 증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성과 안정성, 수익성 중시의 경영혁신 촉진 - 합리적이고 효율적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성과주의, 조직혼란, 선진기업 의존으로 장기 경쟁력 약화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이용자 편익증대에 대한 기대이다. 개별사업자의 활성화를 통해 통신서비스시장의 경쟁 촉진이 기대되며, 이를 통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넷째, 선진 인사관행 도입계기가 된다. 성과주의와 시장가치에 기반한 연봉제 등 선진인사기법이 빠르게 도입되어, 기존의 학력이나 근속, 남성중심의 인사관행이 붕괴되고 실무경험과 능력을 중시하는 선진 인사관행으로 전환된다. 또한 노동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탄력적 인력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인재 포트폴리오에 입각한 인력관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정규직 중심 인력구조가 아웃소싱, 분사, 비정규직 등 다양한 인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인력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표 5> 참조).

2. 부정적 영향

위와 같이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에 따른 통신사업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9]-[12].

첫째, 수익의 과다한 해외유출로 인한 국가경제에 대한 악영향이다. 외자유치에 대한 대가로 외국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와 국내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해 실현된 수익이 해외로 과다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 주력사업 매각에 따른 성장기반이 잠식될 수 있다.

둘째, M&A 등으로 인한 경영주도권 상실이다(<표 6> 참조). 투기적이고 독점적인 국내외 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M&A 등을 통해 유망한 신규산업 전반에 대한 경영주도권이 외국사업자들에게 넘어갈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축적 및 고수익 창출기회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⁴⁾

셋째, 국내기업 및 국민의 반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신시장에 진입하려는 국내 기업들과 국익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을 문제시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외국인분 제한을 완화할 경우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증대로 해당 부분의 발전을 기할 수는 있으나, 외국인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통신사업자의 국적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넷째, 외국자본들은 자금운용을 단기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익위주, 성과중심 경영을 하고 단기 자금운용에 치중하고, 장기투자보다 단기

4) 신규서비스는 “선 국내경쟁 후 대외개방”의 관점에서 개방 이전 국내사업자간 경쟁여건 조성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중기적 외국인 투자는 유망 신규서비스에 참여하여 미래에 고수익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의 경우 국내사업자의 기술수준이나 자본능력이 외국사업자보다 열등한 형편이다.

<표 6> 국내 적대적 M&A의 사례

공개매수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한솔그룹이 동해종금(현 한솔종금) 인수 • 1994년 나이키는 삼나스포르츠 공개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키는 삼나스포르츠 주식을 시가보다 30% 비싼 가격으로 공개 매수하였으나, 삼나스포르츠는 자금력 부족으로 대항을 포기 • 1997년 사보이호텔이 신성무역 인수
2대주주에 의한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한화종금의 2대주주가 우호세력을 끌어들여 경영권 장악을 시도했으나 실패
외국자본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신동방그룹이 홍콩계 자본과 연합하여 대농그룹 미도파에 대한 공개매수를 시도했으나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농은 전경련 지원 하에 우호지분 매입, 사모 CB·BW 발행으로 경영권 방어에는 성공하였으나 자금난 가중으로 부도유예신청, 그룹이 해체됨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외자와 한국경제, 2000. 9., p. 18.

<표 7> 외국인 지분한도별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

현행 49% 유지시	50%~100% 미만으로 확대시	제한 규정 철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결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변경, M&A와 이사, 감사 해임 가능 - M&A, 이사 해임권 저지 가능 • 특별결의 통과 저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최소한 특별결의 사안의 통과를 막는 것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권에 영향력 행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감사를 선임하여 사업추진에 강력하게 의사반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권 장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감사 임명 가능 ※ 이사, 감사 임명 등은 보통결의로 출석주주 주식의 2/3와 총발행주식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사장 해임 가능) • 특수결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및 M&A 가능 - 66.7% 이상의 주식보유는 M&A와 이사 해임 관철 가능

주) 실제로는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며 출석주주 중에는 외국인과 동일한 의견을 보유한 주주도 존재할 수 있어 각 통신사업자의 대주주의 성향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익성 위주의 자금운용으로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다섯째, 고용불안 증가, 조직신뢰 붕괴 등 부작용의 가능성 증대이다. 인력운영의 유연화, 구조조정 의 일상화 등으로 대량실업 등에 대한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성과주의, 전문성 중시 등으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조직 신뢰가 약화되며, 선진형 인사관행 도입과정에서 노사간의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정부 정책수단에 대한 제약과 실효성 약화 가능성이다. 미국식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크게 축소되고 이전과 같이 간섭이나 직접개입이 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WTO 기본통신협정 발효의 전후로 규제완화 및 개방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 상당부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외국사업자의 제도개선 요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외국사업자의 경우 출연금, 접속제도 등과 관련하여 투명성 요구와 묵시적 행정지도 관행 개선 등을 요구

하고 있으며,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국제전화서비스의 착·발신 규제 완화, 기간사업자와의 연동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규제를 실시할 경우 외국 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규제와 관련한 마찰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지분한도별 통신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지분한도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분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외국인 지분한도가 49%일 경우, 50%~100% 미만인 경우, 제한규정을 완전 철폐할 경우에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표 7> 참조)[13].

가. 외국인 지분한도를 49%로 유지했을 경우의 효과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과 같이 49%로 유지했을

<표 8> 주주총회 의결방법(상법)

구분	결의 방식	결의 사항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결의(상법 368조 1항)	특별결의나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보통결의에 의함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결의(434조) 대주주의 횡포와 그로 인한 소주주들이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한 결의에 적용	정관변경(434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374조 1항 1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의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374조 1항 2호)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374조 1항 3조) 사후설립(375조)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385조 1항, 415조) 액면미달의 신주발행(417조 1항) 지분의 감소(438조 1항) 주주결의에 의한 회사해산(518조) 합병계약서의 승인(522조 3항) 신설합병에서의 설립위원회 선임(175조 2항)
특수결의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결의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324조, 400조) 이사, 감사,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400조, 415조, 542조 2항)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604조 1항)

<자료>: 정보통신정책학회, 통신사업 외국자본 유입효과 분석 및 전망, 2000. 3., pp. 91 - 93[14].

<표 9> 외국인 지분한도별 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49% 유지	외국인 투자의 순기능 확대 국민의 반발 방지	WTO 등 국제적 흐름 역행으로 개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외국인 지분상승으로 인한 M&A 등으로 경영주도권 상실 우려
50%이상 허용	시장개방으로 인한 WTO 등 국제사회에서 대외신인도 향상 외국자본 유입 확대 구조조정의 기회 확대 경영의 합리화 및 투명성 확대 선진 인사관리 도입 관행적 규제완화	경영권 및 적대적 M&A 증가 외국인 주주에 의한 경영권 간섭 심화 선진국 경영의 급속한 도입으로 경영상 비용 발생 정부정책수립 제약과 실효성 약화

경우, 외국인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특별결의가 가능하다. 특별결의에 속하는 권한으로는 정관변경, M&A와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이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M&A와 이사 해임권의 저지 및 특별결의의 통과저지도 가능하다. 즉 주식의 33%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소한 특별결의 사안의 통과를 막는 것이 가능함으로써 소극적 경영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표 8> 참조).

한편 외국인 지분한도가 49%일 때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외국인 투자의 순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 즉, 외국인 투자는 배당획득을 목적으

로 하는 지분 참여로 KT는 외국으로부터 자본 도입을 통하여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경우 외국인 지분참여의 순기능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국민의 반발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통신기업이 외국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아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49%를 유지한다면 외국자본의 국내통신시장 지배와 국내기업의 해외유출 등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방지할 수 있다(<표 9> 참조).

이와 반대로 부정적 효과로는 첫째, WTO 등 국제적 흐름 역행으로 개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지분제한은 내외국인 차

별정책으로 WTO가 추구하는 기본정신에 위배된다. 둘째,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상승으로 인한 M&A 및 경영권 상실이 우려된다.

나. 외국인 지분한도를 50% 이상으로 확대했을 경우의 효과

외국인 지분한도를 50%~100% 미만으로 확대 시의 외국인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이사, 감사를 선임하여 사업추진에 강력하게 의사반영이 가능해지는 등 적극적으로 경영권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⁵⁾ 또한 특수결의가 가능하고 이사해임 및 M&A 등이 가능해진다.⁶⁾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시장 개방으로 인한 WTO 등 국제사회에서 대외신인도가 향상된다. 둘째, 외국자본 유입 확대 등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마케팅, 망시설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셋째, 통신사업 구조조정의 기회가 확대된다. 넷째, 경영의 합리화 및 투명성이 확대된다. 따라서 통신서비스시장의 경쟁촉진 및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으며, 재무의 건전성과 현금흐름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섯째, 선진 인사관리가 도입될 수 있으며 실무경험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다. 여섯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행적 규제가 완화된다. 외국인 대주주의 등장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통신사업자의 규제 및 사업환경 개선이 가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출연금, 접속제도 등과 관련하여 투명성 요구와 묵시적 행정지도 관행 개선 등).

그러나 외국인 지분한도가 확대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도 많다. 첫째, 경영권 및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M&A 등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주도권이 외국사업자들에게 넘어갈 경우 통신사업자가 지속적인 기술축적 및 고수의

창출기회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 주주에 의한 경영권 간섭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주주들은 주요 경영 현안을 간섭하고, 사외이사와 같은 경영진 추천 등 사업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영자는 외국인 대주주를 의식하여 임원 선임을 주주총회까지 연기하는 등 경영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외국인 주주들의 사업관련 중요정보 요구로 인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주주들의 경영에 대한 과도한 견제장치에 비해 경영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족해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셋째, 선진국 경영의 급속한 도입으로 경영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주주들은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투자방식으로 단기적 현금흐름을 중시하므로 기업경영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로 인한 경영환경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불안 증가와 조직신뢰 붕괴의 가능성이 높다. 일상적인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회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파괴로 경영환경 변화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 넷째, 정부정책수립 제약과 실효성 약화 가능성의 증가이다. 규제 관련 외국투자자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마찰은 통신사업자와 규제기관과의 관계 훼손 및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

V.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시 질적 규제 도입방안 검토

1. 공익성 규제

현재 미국이 활용하고 있는 공익성심사와 같은 질적 규제 수단의 도입이 요망되며 도입 시는 심사 절차, 기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유지함으로써 내·외국인간 차별성을 이유로 한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성규제를 위하여 공익성의 범위와 구체적인

5) 이사, 감사 임명 등은 보통결의로 출석주주 주식의 2/3와 총 발행주식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사장 해임 가능)하다.

6) 상법상 66.7% 이상의 주식보유는 M&A와 이사해임 관철이 가능하다.

<표 10> 대주주 의결권의 제한 내용

법률명	제한 내용	도입	근거
상법	• 감사 선임 시 의결권 3%로 제한	1962. 1.	제409조 ②
증권거래법	• 다음의 경우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 - 감사,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 포함)	1999. 2.	제191조 11 ①
	-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2001. 3.	제54조 6 ⑥
	- 집중투표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방식을 배제하고자 정관을 변경할 경우	2001. 3.	제191조 18 ②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주주 규제실태와 시사점, 2002. 3., p. 3[15].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공익성의 범위는 시장지배력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외교 및 무역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공익성의 범위를 국제관계, 국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보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2. 동일인 지분한도 설정⁷⁾

민영화된 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공익성 유지를 위해 많은 국가들이 민영화된 기업의 개별주주가 소유할 수 있는 지분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민영화된 기업은 정관에 의해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된 자의 지분보유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개별 주주의 보유 지분은 통상 5%에서 15%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보유 한도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출석권, 의결권, 주주명부 기재권 등 주주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한도를 초과한 지분은 일정기일 내에 매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도 보유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기

업이 초과한 지분의 등록과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일정기일 내에 초과한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3. 의결권 제한

주주가 갖는 의결권 제한은 의결권이 상이한 주식을 발행하거나 개별주주 또는 외국인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에 의한 다. 의결권이 상이한 주식으로는 다수의결권 주식과 무의결권 주식이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회사 설립자 가족에 의한 회사지배를 보장하면서 외부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다수의결권 주식이 발행되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방송사의 경우에 다수의결권 주식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무의결권의 주식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시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하였다.

우리 나라는 개별주주 또는 외국인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한도 제한은 현재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표 10> 참조).

4. 의결권 블록(안정주주제) 형성

의결권 블록 혹은 안정주주제는 특정 주주집단이 주주간 협정을 체결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식매입과정 또는 초기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해 활용되어 왔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민영화된 기업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관련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통일된 방법으로 의결권

7) 동일인 지분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외국인 동일지분한도를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동일인지분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WTO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어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 시장개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 다른 대안으로서 사업자의 정관에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두고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보다 WTO에서의 문제의 소지가 작으며 효과적으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을 행사한 바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1986년~1988년, 1993년, 1994년 공기업 민영화 시 의결권 블록이 사용되었다.

의결권 블록에 속한 기관투자자들은 민영화되는 공기업 주식의 일정비율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으며, 인수한 주식의 처분은 제한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의결권 블록에 속한 주주는 3%~6%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우선적으로 공기업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처분 시에는 의결권 블록에 속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처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 받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결권 블록이 와해되고 새로운 의결권 블록을 재조직하여야 하므로 특정 목적을 위한 의결권 블록이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렵다.

5. 우리사주 확대

우리사주 확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사주의 확대는 종업원들의 주인의식의 증가로 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분확대에 따른 경영권 침해 및 M&A 등으로부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주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사주 신탁제도(ESOP)가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6. 사후감독 기능 강화

우리 나라의 경우 법체계가 단순화되어 있고 주식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어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는 곧바로 외국인 지분증가와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지분보유 정도를 수량적으로 모니터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마련되어 있지만, 외국인투자의 성격 및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질적으로 모니터 할 수 있는 총지분제한 등의 장치가 부족하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한도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적대적 M&A나 경영권확보와 관련한 규제기관의 사후 감독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 더불어 독점 및 공정경쟁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성격 및 영향 등을 질적으로 모니터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적대적 M&A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전략 구사가 매우 중요하다.

VI. 결론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면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 참여를 통한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여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경우 순기능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크다면 지분확대가 통신사업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 가능성과 대책들을 분석해 보았다.

한편, WTO DDA 통신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는 곧 외국인에 의한 국내사업자 지분의 과반수 이상 소유를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법체계가 단순화되어 있어 지분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순간, 외국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큰 문제없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즉,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를 수량적으로 모니터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마련되어 있지만, 외국인투자의 성격 및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질적으로 모니터 할 수 있는 총지분제한 test rule 등의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확대에 앞서 통신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과급효과의 분석이 중요하며, 외국인 지분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질적 규제 등 새로운 제도적 장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의 출범과 향후 대응방안, 2001. 12., pp. 68 - 73.
- [2] 김준동·이한영·장범진 외,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

- 방 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1-11, 2001. 12., pp. 29 - 110.
- [3] A.T. Kearney, 한국통신 민영화 기본방향: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01. 3.
- [4] 이한영·김용규·이내찬 외, “시장개방이 국내통신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1-12, 2001. 2.
- [5] 이한영·박종훈·김진기 외, “주요국가간 통신서비스 정책비교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2., pp. 269 - 276.
- [6] WTO, TELECOMMUNICATIONS SERVICES: COMMITMENTS & EXEMPTIONS, 2002. 4., http://www.wto.org/wto/english/tratop_e/serv_e/telecom_e/telecom_highlights_commit_exempt_e.htm.
- [7] WTO, TELECOMMUNICATIONS SERVICES: NEGOTIATIONS Highlights of Commitments and M.F.N. Exemptions Resulting from the Negotiations, 2001. 6., http://www.wto.org/wto/english/tratop_e/servte_e/tel113_e.thm
- [8] 전기통신사업법, 2001. 1. 16. 일부개정
- [9] 삼성경제연구소, 외자 경영의 빛과 그늘, CEO Information(281), 2001. 1. 31., pp. 14 - 26.
- [10] 삼성경제연구소, 외자와 한국경제, CEO Information (264), 2000. 9. 27., p. 12 .
- [11] 삼성경제연구소, 외자유입과 기업경영, CEO Information(138), 1998. 4. 22., pp. 6 - 23.
- [12] 삼성경제연구소,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영향 및 전망, Issue Paper, 1998. 2., pp. 13 - 19.
- [13] 상법, 2001. 12. 29. 일부개정
- [14] 정보통신정책학회, 통신사업 외국자본 유입효과 분석 및 전망, 2000. 3., pp. 91 - 93.
- [15]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주주 규제실태와 시사점, CEO Report on Current Issue(CER-2002-4), 2002. 3.